2026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6-26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내용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2명	26. 11. 10. ~26. 12. 18.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속기업무 보조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1. 10. ~ 12. 18.

❍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 근 무 지 :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홍보기록팀

❍ 급여조건 : 일급 82,560원(시간급 10,320원×8시간)

※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

❍ 자격증 : 한글속기(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 3급 이상인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구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구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기간	26. 9. 28.(월) ~ 10. 8.(목)	수성구의회 누리집 나라일터 누리집
원서접수 기간	26. 10. 12.(월) 09:00 ~ 10. 14.(수) 18:00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서류전형 심사	26. 10. 16.(금) ~ 10. 19.(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26. 10. 20.(화)	수성구의회 누리집 (개별 통보 없음)
면접전형	26. 10. 23.(금)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일	26. 10. 29.(목)	수성구의회 누리집 (개별 통보 없음)
채용 예정일	26. 11. 10.(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2026. 10. 12.(월) 09:00 ~ 10. 14.(수) 18:00

❍ **원서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50
 수성구의회 1층 의회사무국 홍보기록팀
- **전자우편접수** : jihyun429@korea.kr
 ***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
 *** 전자우편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666-2075)**
 * 근무시간(09:00~18:00) 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서류전형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공통 (필수)	① 응시원서 1부	붙임1
	②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③ 한글속기 자격증(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3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4
선택 (해당자)	⑥ 경력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⑦ 사회형평가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중복적용 불가
	⑧ 기타 자격증(사본)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6. 가점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채용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면접시험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7.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의 경우 탈락)

❍ 서류전형 합격자명단 : 수성구의회 누리집 [의회소식]-[공지사항] 공고 확인

나. 2차 면접전형 : 관련 지식, 관심도, 자질, 성실성 등 종합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평가항목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업무관련 지식·관심도	의사전달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성실성	합계
30점	30점	20점	20점	100점

❍ 동점자처리 : 업무관련 지식·관심도 > 의사전달의 정확성·논리성 점수 높은 순

8.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서류 반환 의사가 있는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합격자 제외)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는 직접 교부 또는 지정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인 부담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수성구의회(☎666-2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1. 기본사항			
지원분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접수번호	*미기재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 우편	
생일	*생년 미기재		
주소			
사회형평 가점 (해당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면접시험 만점의 3%		

2. 응시자격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한글속기(급)		대한상공회의소

3. 경력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력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2026. . .

응 시 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응시자용)

2026년도 수성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0일까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등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귀중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